

2011. 5. 17(화)

2011년도 체납세 정리대책 보고



울산광역시중구
Junggu office Ulsan Metropolitan City
[세 무 과]

목 차

□ 2010년도 체납세 정리실적 분석	-----	3
○ 정리실적	-----	3
○ 주요성과	-----	3

2010년도 체납세 정리실적 분석

□ 2011년도 체납세 정리 종합대책	-----	5
○ 목표 및 중점 실행과제	-----	5
○ 체납현황 및 정리목표	-----	6
○ 세부 추진계획	-----	6
○ 신규시책 추진(특수시책)	-----	10

1 정리실적

(결산기준, 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부과액 (A)	정리실적 (B)			채납액 (A-B)	징수율 (C/A)	정리율 (B/A)	
		계	징수액(C)	결손액				
합계	129,822	117,045	114,264	2,781	12,777	88.0	90.2	
시세	계	118,113	106,713	104,194	2,519	11,400	88.2	90.3
	현년도	104,654	101,622	101,331	291	3,032	96.8	97.1
	과년도	13,459	5,091	2,863	2,228	8,368	21.3	37.8
구세	계	11,709	10,322	10,070	262	1,377	86.0	88.2
	현년도	10,245	9,793	9,747	46	452	95.1	95.6
	과년도	1,464	539	323	216	925	22.1	36.8

2 주요성과

(결산기준, 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
채납액	20,749	19,760	17,723	15,999	12,777
증감액	+ 1,281	- 989	- 2,038	- 1,724	- 3,222



- 경기침체에 따른 열악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,
-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증대 및 정리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철저한 자료관리 및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**4년 연속 이월 체납액 감소**

③ 체납세 징수 문제점 및 대책

- 문제점 : 중구의 물리적 세입여건과 납세의무자 특성
 - ◆ 교동·북정동·북산동·학성동 등 주거지역은 노후·불량건축물 밀집 및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● 도심이탈현상 지속 및 장기간 상권 침체가 심화되어 공실율(빈점포)이 증가, 사업자 및 업종 빈번 교체
 - ◆ 구조적으로 공장·대형 사업장과 현대 자동차, SK 등 울산 최대의 고액 납세자(특히, 법인)의 납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며,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납세구성원비중 개인납세자가 평균 82.2%를 차지, 특히 개인납세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5% 차지하는 등 경제활동 인구가 저조하여 고질 상습 체납자가 다수 존재
 - ◆ 대형 건축물 신축 후 미분양·부도 등으로 타구에 비해 납세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, 사업부진에 따른 휴·폐업, 경매 등 1999년 이후 장기 체납자 상존
- 대책 : 전직원 징수요원화로 목표액 초과 달성 총력
 - ◆ 축적된 체납세 정리기법을 구축·정착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 및 신 징수기법(휴면계좌 압류) 도입 추진

2011년도 체납세 정리 종합대책

목표

부과한 지방세는 반드시 정리!

추진
방향

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 → 97% 초과달성(3%이내 억제)
과년도 체납액 체계적 정리 → 45% 이상 정리

실행

과제

- ✓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 상설반 운영
- ✓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
- ✓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설정·운영
- ✓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
- ✓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
- ✓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
- ✓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
- ✓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미반환 번호판 제로화
- ✓ 관허사업 제한
- ✓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
- ✓ 금융정보 일괄조회
- ✓ 체납자 경제회생 맞춤형 체납처분



체납현황 및 정리목표

① 체납액 및 정리목표

(결산기준, 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이 월 체납액	목 표 액		
		계	징 수	결 손
계	12,777	5,750	3,833	1,917
시 세	11,400	5,130	3,420	1,710
구 세	1,377	620	413	207

② 2011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

(2011. 5. 12 기준, 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이 월 체납액	목 표 액 (A)	정 리 액(B)			정리율 (B/A)
			계	징 수	결 손	
계	12,777	5,750	2,270	803	1,467	39.5
시 세	11,400	5,130	2,027	660	1,367	39.5
구 세	1,377	620	243	143	100	39.2



세부 추진계획

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 상설반 운영 : 3개반 11명

구 분	직위(급)	인 원	집중 징수활동 내용	비 고
총괄	과장	1명	▪ 체납세 징수상황 및 보고체계 확립	
고액체납 전담반 (3명)	세무6급	1명	▪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▪ 현장 독려 및 실태조사를 통한 결손처리	
	세무7급	2명		
고질체납 차량 정리반 (3명)	행정6급외	3명	▪ 번호판 영치 및 미반환 번호판 정리 ▪ 영치와 연계한 차량 공매 활성화 ▪ 고질체납차량 일제 정비 ▪ 징수촉탁 활동 강화(매주 수요일)	공공근로 1명
압류 공매반 (4명)	세무7급	1명	▪ 약식감정을 통한 전자공매 의뢰	
	세무7급	1명	▪ 부동산 압류, 각종 채권 압류	
	세무7급	1명	▪ 금융자산 등 압류	
	세무7급	1명	▪ 징수불능분 결손처리	

② **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**

- 부과·징수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
 -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납기내 집중 독려
 - 독촉기한 경과전 재산조회 완료를 통한 신속 압류
-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
 - 정기분 납기내 세무과 직원 할당제 실시
 - SMS 문자 발송 및 일반전화 음성메세지 전송을 통한 홍보

③ **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·운영**

- 운영시기 : 연 3회
 - 상반기 : '11. 4 ~ 6월(3개월간) 세무과 자체 징수할당제
 - 하반기 : '11. 8 ~ 10월(3개월간) 전 직원 징수할당제
 - 출납폐쇄기 : '12. 1 ~ 2월(2개월간)
- 중점 추진사항
 -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전직원 징수할당제를 통한 독려
 - 관외분 소액체납자 집중독려 및 실태조사를 통한 결손처분 병행

④ **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**

- 대 상 :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, 3천만원 이상 체납자
- 추진사항
 - 명단공개 대상자 조사완료 후 심의요청 : 3월 25일
⇒ 75명 83억원
 - 최종 명단공개 : 12월(셋째주 월요일)

⑤ **고액체납자 출국금지**

- 대 상 : 5천만원 이상 체납자(9명 23억원)
- 추진일정
 - 출입국 사실조회 및 채권확보 실태조사 : 3월
 - 출국금지 사전예고 및 자진 납부기한 : 4월 15일
 - 출국금지 및 기간연장 요청 : 4월 15일

⑥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

- 대 상 : 21명 10억원
- 추진사항
 - 상·하반기 2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록
 - 안내문을 통한 자진납부 독려후 분납자 등 유예

⑦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

- 추진개요
 - 시 기 : 3회(6월, 10월, 12월)
 - 대 상 : 관외거주 100만원 이상 체납자 89명
 - 징수반 : 2인 1조 5개조, 10명으로 구성
- 수행사항
 - 체납자 주소지 현장 직접방문 체납세 납부독려(분납유도)
 - 체납사유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결손처분 근거자료 확보

⑧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미반환 번호판 제로화 추진

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: 목표대수 2,000대

- 상설 2개조 운영, 상·하반기 야간 영치 활동
- 분야별 체계적 영치활동 추진
 - 고급 위락·쇼핑시설 : 매주 화, 목요일
 - 징수촉탁 차량 영치 : 매월 둘째, 넷째 주 수요일

② 미반환 영치 번호판 일제정리

- 미반환 번호판 현황 : 총 61대(11. 5. 12일 현재)
- 장기 미반환 차량 일제 정리 계획 별도 수립 시행
- 상설 반환독려 체계 확립
 - 영치 후 1주 경과 : 영치시 확보된 전화를 통한 개별 독려

- 영치 후 1달 경과 : 현장 조사 병행하여 차량 공매 추진

9 관허사업 제한

- 대 상 : 3회 이상, 100만원 이상 체납자 : 39명 259백만원
- 추진사항
 -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발송 : 39명
 - 예고자 독려를 통한 납부 : 22명 41백만원(5. 12일 현재)
 - 인·허가 부서에 허가취소 등 제한조치 요구 : 4. 16일

10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

- 조사대상 : 5백만원 이상 비상장 체납법인 중, 징수불가 법인
- 조사내용
 - 체납법인 실태조사 :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대상 법인 파악
 - 과점주주 해당여부 조사 : 친족 등 특수관계
- 2010년 8명 지정(완납 2백만원, 압류 3건)

11 금융거래 정보 일괄조회

- 조회주기 : 연 4회(분기별)
- 의뢰기관 : 관내 455개 금융기관 지점(은행 392 증권 30, 보험사 33)
- 조회대상 : 체납액 1천만원 이하 체납자
- 추진사항 : 압류 93건, 추심 59건, 133백만원 징수(5. 12일현재)

12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맞춤형 체납처분

- 추진사항
 - 추진시기 : 연중상시
 - 대 상 : 체납액 및 결손액이 1천만원 이상 자
 - 체납자 납부의지에 따른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자 경제회생 및 체납세 징수 등 상생전략

-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지원
- 공공기록정보 등록자에 대한 신용회생 기회 부여

III

신규시책 추진

지방세 체납자 휴면계좌 추적 체납액 징수

I 추진배경 및 착안점

- 휴면계좌란,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(예금 5년·보험금 5년) 계좌로,
- 특히,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금융기관 연체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은 채권자를 피해 다니고 거주불명 등으로 휴면계좌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 허다
-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휴면계좌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,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“통합조회시스템”을 통해서 휴면금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있는 점을 착안, 체납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

II 체납자 휴면계좌 추적 징수

- 우리구 체납자의 보험가입 조사 실시 : 2011. 4. 25 ~ 4. 30
 - ➔ 1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: **10,553명 8,924백만원**(국세 포함)
- 고액 체납자 가입내역 결과 조사 및 압류·추심실시 : 2011. 5. 4~ 5. 13
 - ➔ 13명 55백만원 압류 (**33백만원 추심후 체납액 총당**)
- 새마을금고의 『휴면공제금』 과 한국예탁결제원 『휴면주식

및 배당금』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및 추진 : 2011. 6. 15 한

III 기대효과

- 채납자에게는 경제적 도움을, 채납세금도 거주는 일석이조 효과